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4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0.

발 의 자:조인철·정진욱·문금주

신정훈 • 민형배 • 박균택

안도걸 • 양부남 • 정준호

이건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죄의 수사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,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.

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2제5항)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"제공의 절차"를 "제공의 절차 및 비식별화 조치의범위"로 한다.

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의2(수술실 내 폐쇄회로	제38조의2(수술실 내 폐쇄회로
텔레비전의 설치・운영) ① ~	텔레비전의 설치·운영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	5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	
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(의료	
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	
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	
같다)하게 하거나 제공(사본의	
발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	
서 같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	
<u><후단 신설></u>	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
	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
	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
	를 하여야 한다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⑥ ~ ⑨ (생 략)	⑥ ~ ⑨ (현행과 같음)
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	10
레비전의 설치 기준, 제2항에	
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	
청의 절차, 제2항제1호부터 제3	
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	

구;	체적인	기준,	제5항(에 따	른
열	람 • <u>제 ⁻</u>	공의 절	<u>설차</u> , 제9)항에	따
른	보관기]준 및	보관기	간의	연
장	사유	등에	필요한	사항	은
보?	건복지-	부령으.	로 정한	다.	

① (생 략)

제공의 절차 및 비식별화
조치의 범위
① (현행과 같음)